

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38
의 결 년 월 일	93. 12. 21 (제25회)

제출년월일 : 1993. 12. .

제 출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회

☐ 제안이유

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융자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영세중소기업 경영에 있어 안정적 조업을 보장하여 주고자 함.

☐ 주요골자

-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지원사항 신설
- 현 융자기간 1년을 2년으로 연장

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(융자 대상업체)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기타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

제9조(융자조건) 제5항 중 “1년 이내”를 “2년 이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
제5조(용자대상업체)	제5조(용자대상업체)
1.	1.
2.	2.
3.	3.
	4. <u>기타 시장의 지원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</u>
제9조(용자조건)①~④(생략)	제9조(용자조건) ①~④(현행과 같음)
⑤용자기간은 <u>1년 이내</u> 로 한다.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간 연장할수 있다.	⑤용자기간은 <u>2년 이내</u> 로 한다.

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39
의결 년월일	93. 12. 24 (제25회)

제출년월일 : 1993. 12. .

제출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회

□ 제안이유

- 부천시 도축장 운영에 있어 도축해체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,
- 도축장 경영 합리화 및 위생적인 육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도축해체 수수료 개정
 - 소 수수료 : “24,000원”을 “26,400원”으로 상향 인상
 - 돼지 수수료 : “4,900”을 “5,390”으로 상향 인상